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0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에 따르면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 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및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며, 비과세기준은 「소득세법」 제12조를 따른다고 규정

□ 지적사항

사례1> 5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한 강사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에도 누락

사례2>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수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에도 누락

사례3>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에도 누락

□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 강사수당 등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누락 되지 않도록 관련 법에 따른 과세 여부 확인에 유의할 것